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2999호

붙임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2999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00호

붙임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3000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각 읍·면에 조직된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완도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차량운행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완도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완도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개선하

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3001호

붙임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3001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
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취·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기업,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02호

붙임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완도군 홈페이지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

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
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
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재난·재해 예방 복구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완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기획예산실장
 - 나. 농업축산과장
 - 다. 수산경영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 수
 -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 라.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 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기존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팀장이 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산명				
유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m ²)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 (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m ²)
사후관리기간	기존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직인

유의사항

-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완도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m ²)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기준 : 연 월 일 ~ 연 월 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직인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신청인 (예금주)		계좌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 ·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사업명 :

기피 위원

성명	소속	기피 사유

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연락처 :

직위 :

성명 : (인)

완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귀하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03호

붙임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3003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거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거 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2. 혼인신고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3. 주택가격 6억원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인 경우 4. 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주택마련 대출이자 지원 - 실제 이자 납부액 지원(월 최대 25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노인 목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에 따름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조례」에 따름 	
전입세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출산·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귀농·귀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에 따름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04호

붙임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부서장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자 공개모집의 절차는 영 제56조의4에 따른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인사운영, 예산의 집행, 직원의 복무 등 공단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단, 더 이상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게 공단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2. 본인의 공단 대표권 제한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안을 심의할 경우

제4장 사업

제1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치유시설 관리 · 운영
2. 문화관광시설 관리 · 운영
3. 제1호부터 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수행)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②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영 제63조 제2항에 따른다.

③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군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세입) 제19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한다.

제2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6조(결산) ①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군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27조(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상임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완도군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 설립 당시 군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억 원으로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군수가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공단의 최초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둔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05호

붙임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이용일 까지 납부할 수 있다”를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해양치유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행사의 운영) ① 완도군은 해양치유시설 활성화 및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시설 운영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해양치유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3. 그 밖에 해양치유시설을 운영하거나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기념품, 경품 등의 종류와 제공절차 및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

하여야 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해양치유시설 시설이용 기준과 이용료(제6조 관련)

1. 시설 이용기준 및 개관시간

구 분	기 준	개 관 시 간	비고
해양치유센터	1일	10:00 ~ 19:00	
해양기후치유센터	1일	09:00 ~ 18:00	프로그램 운영 회차에 따라 상이
해양문화치유센터	1일	09:00 ~ 18:00	

* 이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2. 이 용 료

시 설 명	프로그램	이 용 료	비 고	
해양 치유센터	기본 프로그램 (베이식)	대 인 36,000원 소 인 26,000원	· 단체예약(20인 이상) 20% 할인 · 완도군민 평일 50%할인 · 1층 5개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디렉스)	대 인 100,000원 소 인 70,000원	· 단체예약(20인 이상) 20% 할인 · 완도군민 평일 20%할인 · 2층 3개(+3) 프로그램	
	프리미엄 프로그램	대 인 125,000원 소 인 80,000원	· 단체예약(20인 이상) 20% 할인 · 완도군민 평일 20%할인 · 1층 5개 + 2층 3개(+3) 프로그램	
	전문 수중재활 프로그램	1대1 90,000원 2대1 70,000원 3대1 50,000원	· 1인 기준	
해양기후 치유센터	단일 프로그램	대 인 10,000원 소 인 6,000원	· 단체예약(20인 이상) 20% 할인	
	복합 프로그램	대 인 15,000원 소 인 8,000원		
해양문화 치유센터	시청각동	무료	· 3인 이상 가족 동반 20%할인 · 10세 이상 이용 가능 단, 미취학아동 보호자 동반참여	
	촉각동	20,000원		
	후각동			
	미각동			

* 소인 : 36개월 ~ 12세(초등학생)

*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 연계 상품 운영, 운영기간(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 할인 가능. 단 중복할인 불가

3. 대 여 료

시설명	구 분	기 준	이용요금	비고
해양 치유센터	수영복, 래쉬가드	1일	4,000원	
	수영모	1일	1,000원	
	회의실	1회	200,000원	1층 / 4시간 기준
	다목적실(大)	1회	300,000원	2층 / 4시간 기준
	다목적실(小)	1회	200,000원	2층 / 4시간 기준
해양기후 치유센터	다목적실	1회	300,000원	4시간 기준

* 회의실 및 다목적실 대여시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당 50,000원 추가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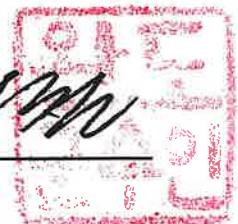
이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반환기준		
	이용일	반 환 비 율	비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7일전까지	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	
	3일전까지	총 요금의 90% (10% 공제 후 반환)	
	1일전까지	총 요금의 80% (20% 공제 후 반환)	
	당일	총 요금의 20% (80% 공제 후 반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	
해당 시설물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	이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통보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완도군 조례 제3006호

붙임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3006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로, “주민자치 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위촉일 기준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제20조제2항 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07호

붙임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3007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완도군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의 사람 중에서”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1. 당연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행정지원과장

나. 문화예술과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종전의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을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2호”를 “군수는 제5조제2호”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수”를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08호

붙임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3008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복지위원회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09호

붙임 완도군 복지위원회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3009호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10호

붙임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3010호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3년으”를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국장 또는 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중 “회계서류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를 “회계서류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연도별 청소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11호

붙임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3011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폐지조례**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12호

붙임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1부.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군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

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완도군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완도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완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완도군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

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완도군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8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완도군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완도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전라남도 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당연직 1명, 위촉직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과장, 산림휴양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해서는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5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법 제26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

-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

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 제23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 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할 수 있다.

제26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완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 한다.

제31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4.)에서
의결된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조례 제3013호

붙임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완도군 조례 제3013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완도군민이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2.“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

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완도군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청취)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 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완도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이영호



완도군 규칙 제1276호

붙임 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완도군 규칙 제1276호

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 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 반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완도군에 등 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8.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완도군 규칙 제1277호

붙임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11. 그 밖의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심의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운영위원회 회”를 “심의위원회 회”로, “운영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으로,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심의위원회에 실행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12월 7일

완도군수



완도군 훈령 제382호

붙임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1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이사장, 감사 또는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롭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완도군에 둔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
2.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당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④ 완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당연직 이사는 제3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당해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군 소속 공무원(군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하고, 특정 성별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군수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최초 설립때는 공단설립 추진부서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 모집의 원칙)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공개모집계획 수립) 위원회는 공단의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임원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시기) 위원회는 임원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공단의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중 결원 발생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완도군 및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직위
2. 선발인원

3. 응시자격
 4. 직무수행 요건
 5. 임용계약 및 보수
 6. 지원서 접수
 7. 평가방법
 8. 합격자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
- ②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 및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시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
- ⑤ 제4항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 공단 임원직위의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 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평가 합격자에 한함)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4조(응시원서 접수) ①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다만, 모집 공고 시 접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최소 2일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심사절차 및 평가방법) ① 위원회는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시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시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응시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투표로써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시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직무수행 및 자격요건) ① 임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각종 개발사업 및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실행관리 능력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 세부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면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추천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명) ① 군수 또는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과정 공개) ① 이사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용과정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채용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응시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위원의 제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제15조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공단) 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노사화합과 조직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경영수지개선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관리인력 노동생산성 및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기업적 마인드 .관련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별표 2]

직무수행요건(제17조 관련)

직위명 : 이 사장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공단 담당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공단 내·외 단체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 대외적으로 완도군의회, 관련 행정기관 및 다른 공기업, 민간 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환경의 변화분석 및 예측과 기업가적 안목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군민)만족 도출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
- 사건·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다각화

마. 그 밖의 관련 업무

- 신규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접목으로 조직발전을 도모
- 갈등과 분쟁의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

2. 직무수행 요건

가. 조직 내부관리 관련업무

- 차원높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보유
- 시설물관리 및 공단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제시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나. 그 밖의 수행능력 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경영관리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기본자질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 없음
- 경력
 -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경영, 관광 및 헬스케어 산업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우수한 자
 - 조직 관리 능력 및 리더십이 우수한 자
 - 웰니스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자
 -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능력 : 국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직무수행요건(제17조 관련)

직위명 : 이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경영의 전문적인 시견과 능력을 갖고 공단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관장함(「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비상임이사는 공단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 수행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함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완도군·완도군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

-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업무

-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

- 공단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지원 업무 수행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 사업을 관장함에 있어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뤄 조직원의 단결 도모

- 내·외 고객(시민)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마. 그 밖의 관련 업무

-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발굴·접목

-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에 노력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 기업경영 및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 보유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 보유
-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겸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보유

나. 그 밖의 수행능력 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경영관리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크게 요구
기본자질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크게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지방직영기업 등 관련분야 근무 경험자
 - 공직 혹은 기업체 경영 경력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 예산 및 회계분야 또는 경제분야 경험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그밖의 능력
 -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

직무수행요건(제17조 관련)

직위명 : 감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의 회계 및 업무 감사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완도군·완도군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

-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업무

- 공단 회계감사 및 내부감사를 담당하며, 조직의 윤리성 및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조직의 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 사건·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 내·외 고객(시민)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마. 그 밖의 관련 업무

- 선진화된 감사기법의 발굴·접목과 사건사고의 시스템적 예방이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적절히 활용

-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도 힘씀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 해당분야 전문기술에 대한 상당한 소양 보유
- 공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겸비

나. 그 밖의 수행능력 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경영관리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약간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상당히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크게 요구
기본자질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크게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지방직영기업 등 관련분야 근무 경험자
- 공직 혹은 기업체 경영 경력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 예산 및 회계분야 또는 경제분야 경험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능력

- 국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본 소양

[별지 제1호 서식]

입사지원서(제13조 관련)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경력()	지원직무	접수번호
성명	(한글)		
주소			
연락처	(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최종학교 소재지		가점항목	<input type="checkbox"/> 장애대상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
병역	<input type="checkbox"/> 병역필	<input type="checkbox"/> 병역면제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본인의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 직무활동, 연구회, 재능기부 등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20 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인)

* 주어진 칸보다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칸의 개수나 크기를 늘려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서류심사 평가표(제16조 관련)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공단) 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경영수지개선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2023년 월 일

심사위원 : ○ ○ ○ (인)

[별지 제3호서식]

면접심사 평가표(제16조 관련)

지원자 성명 :

구분	평가항목	점수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노동생산성 개선과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력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임원 후보자 추천서(제18조 관련)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별첨 1>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출생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 성별은 성명 밑에 (남 또는 여)로 표기
-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첨 2〉

임원 세부 추천사유

[별지 제5호 서식]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제18조 관련)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2○.○.○)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 · 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간	인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2○.○.○(월) 10:00, 임원회의실

- 응시자○명 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2○.○.○)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2○.○.○ ~ ○.○),
해당 지방공사 · 공단 홈페이지(202○.○.○ ~ ○.○)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3○.○.○부터 203○.○.○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oo신문(202○.○.○)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3○.○.○ ~ ○.○),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3○.○.○ ~ ○.○)

※ 접수기간 : 203○.○.○부터 203○.○.○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비고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형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비고
군수 추천				
"				
군의회 추천				
"				
"				
이사회 추천				
"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제23조 관련)

본인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기간동안 공정. 타당한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 및 추천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2. 임원후보자 심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
 - 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나. 본인의 배우자,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 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3. 심사사항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누설 금지
4.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위원회 회의석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접촉해 오는 경우에는 면담을 거절하고 이러한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

2023년 월 일

위 원 (서명)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제24조 관련)

기피 위원 :

성 명	소 속	기피 사유

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연락처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규칙